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제정 2005-06-28 주체9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결정 제57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자본조성과 리용, 리윤분배, 자본청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재정관리를 규범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영리활동을 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자본의 조성방식)

기업은 자본조성을 출자, 신용, 증여, 리윤저축 같은 방식으로 할수 있다.

제4조(등록자본)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다.

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수 없다.

제5조(등록자본의 규모)

등록자본은 자본총액의 10%이상으로 한다.

기업은 자본총액이 늘어나는데 맞게 등록자본을 늘여야 한다.

제6조(투자의 형태)

기업은 투자를 화페재산, 유형재산, 무형재산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화페재산의 투자는 간환성외화로 하여야 한다.

무형재산의 투자몫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수 없다.

제7조(투자의 인정시점)

투자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페재산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입금시켰을 때

2. 부동산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유형재산은 공업지구에서 정해진 수속을 끝냈을 때

4. 무형재산은 도입 또는 리용으로 경제적리익이 발생하였을 때

제8조(투자재산의 가격)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제9조(유형재산의 내용년한)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축물은 20년 이상

2. 철도차량, 선박과 기계 같은 생산설비는 10년 이상

3.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수송수단은 5년 이상

4. 간자설비와 취득원가가 300US$ 이상인 공구, 비품은 3년 이상

제10조(유형재산의 감가상각)

유형 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형태와 리용방식, 과학기술발간영향 같은것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이 끝날때까지 변경할수 없다.

제11조(유형재산의 잔존가치평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이하로 평가할수 없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를 5%이하로 평가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무형재산의 내용년한)

무형 재산의 내용년한은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무형재산의 내용년한은 예상수익기간으로 하며 예상수익기간을 확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무형재산의 감가상각)

무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무형재산의 잔존가치는 령으로 한다.

제14조(감가상각의 금지)

기업은 경영활동에 리용하지 않는 고정재산과 건설중에 있거나 완성하지 못한 고정재산, 시일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물품구입과 생산제품판매)

기업은 물품을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한 제품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다.

제16조(원가, 비용계산의 금지대상)

원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지출 또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구입을 위한 자본지출

2. 자기 자본에 대한 리자

3. 일반리자률보다 높은 리자

4.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사용료

5. 대외투자 및 관련기업을 대신하여 지출된 관리비

6. 기준을 초과한 회수불가능채권 및 대외사업비

7. 몰수당한 재산손실액, 위약금, 연체료, 벌금, 보상금

8. 당기순리윤으로 적립한 예비기금

9.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

제17조(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5년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

제18조(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대손충당금은 회수불가능한 판매채권, 대부금, 미수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일반기업은 당해년도말 채권잔고의 1%, 금융기업은 2%에 해당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수 있다.

제19조(퇴직보조금지불 대상자와 규모)

기업은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퇴직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퇴직보조금의 계산은 퇴직간 3개월간의 평균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의 설정한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은 퇴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기업은 1년이상 일한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5%에 해당한 금액을 퇴직보조금지불충당금으로 설정할수 있다.

제21조(종업원의 로임)

기업은 종업원의 로임을 공업지구 종업원 월최저로임보다 낮지 않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2조(관리성원의 로임)

기업은 관리성원의 로임기준을 세금납부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3조(종업원의 상금)

기업은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수 있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간액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4조(관리성원의 상금)

기업이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상금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넣어 계산할수 없다.

제25조(대외사업비의 지출)

생산부문, 상업부문의 기업은 순판매액이 20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0.5%를, 200만US$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0.3%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수 있다.

건설, 금융, 교통운수 같은 기타 봉사부문의 기업은 순영업액이 7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1%를, 70만US$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0.5%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수 있다.

제26조(예비기금)

기업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당기순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수 있다.

제27조(자체기금)

기업은 당기순리윤에서 예비기금과 리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원천이 있을 경우 자체기금을 적립할수 있다.

자체기금은 확대재생산, 기술발간 같은 기금으로 쓸수 있다.

제28조(차입금상환)

기업은 차입금을 정한 기간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를 찾지 못하여 상환할 수 없는 차입금은 예비기금에 포함시킨다.

제29조(채무의 평가)

기업은 채무를 당해년도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및 제재)

이 규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재정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